제8회 규제합리화위원회
성장분과위 회의록

2026. 7. 24.

국 무 조 정 실
규 제 조 정 실

Ⅰ. 회의개요

○ 일 시 : ’26. 7. 24. (금) 14:00 ~ 17:00

○ 출석위원(11명)

– 민간위원 : 조원동(주재), 강영철, 김춘순, 류정모, 박민수, 박익수, 이세영, 이종원, 전창대

※ 제척·회피(2) : 남궁범 분과위원장, 최원석 위원

– 정부위원 : 국조실, 법제처

Ⅱ. 상정안건

구분	의안번호	상정기관	의 안 명	구 분
①	2026-193 2026-194	금융위	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	의결안건

Ⅲ. 회의 결과

1. (의결)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」 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」(금융위)

□ 개 요

소관 부처	금융위원회
규제 사무명	□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 운영 관련 준수사항
위원회 결정 내용	○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요건 중 **법위반 형사처벌 이력 요건** 판단시 **예외**를 **인정**할 **필요**가 있으며, 이를 위해 **자본시장법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** 등의 **관련 규정에 준하여 예외조항**을 **마련**할 것을 **개선권고** -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**2단계 입법**을 **신속**히 **제정**하여, 규제의 명확성 차원에서 **불확실성**을 **제거**해 줄 것을 **부대권고** ○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요건 중 **인력,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** 요건은 **원안동의**

□ 논의 내용

(1)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

○ (이해관계자)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등을 도입하는 취지에는 업계도 공감하고 있음

- 다만,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중 법률 위반 이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업권 규제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

○ (이해관계자) 특금법 제7조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된 동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사례를 고려할 때, 시행령에 예외사항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판단됨

○ (이해관계자)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위험기반접근법을 통해 금융범죄 관련 이력이 사업 영위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

○ (이해관계자) 가상자산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 규제안은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

- 특히,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,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시장 진입을 제한할 경우 금융회사 다수의 참여가 어려워져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

○ (이해관계자) 정부의 정책 등으로 금융회사의 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, 예외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가상자산사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과와 기대되는 편익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

- (이해관계자)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국제 송금 비용, 외환 및 결제 수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, 외국인 근로자 및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, AI 기반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○ (○○○ 위원) 현재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?

- (이해관계자)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모든 역량을 갖추기는 어렵지만, 최근 우수한 인재와 투자를 바탕으로 운영체계를 갖추는 사례가 많음. 시장 경쟁과 감독당국의 관리가 병행된다면 스타트업도 혁신성과 법규 준수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

- (이해관계자) 스타트업을 포함한 전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당국과 면밀히 소통하여 윤리행동 강령, 표준 내부통제 기준 등의 자율규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해외사례에서 언급한 위험기반접근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해 보임

- (이해관계자)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FT)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행위별, 종류별 가상자산 불법거래 활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해됨

(2) 부처 의견 청취

○ (부처) 동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금법에 따라 확대된 대주주 결격사유 대상 위반법률을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한 것임

- 대주주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위임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보았으며,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원안을 유지하였음

- 인력·전산·내부통제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, 협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수 수용하였으며, 신고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업계의 실무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

○ (○○○ 위원) 디지털자산법 등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, 이번 특금법 개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과도기적 조치로 볼 수 있는지?

- (○○○ 위원) 시장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에 진입규제가 먼저 강화될 경우 시장형성 자체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, 보다 종합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

- (부처)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법률로, 디지털자산법 등 2단계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우선 반영한 것이며, 진입규제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개정이 추진된 것임

○ (○○○ 위원) 가상자산사업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입규제가 존재하는데, 신고 요건이 강화된 배경은?

- (부처) 과거 가상자산이 악용된 사례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, 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대주주 법률 위반 이력에 대한 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한 타업권 사례는 어떠한지?

- (부처) 자본시장법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결격사유와 예외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,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등을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, 특금법은 시행령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재량을 명확하게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예외사유 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

○ (○○○ 위원) 가상자산사업자는 대부분 스타트업으로, 금융회사 등의 투자유치가 중요한 상황인데,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 등을 이유로 예외 없이 규제를 적용할 경우 자본공급 위축, 신규투자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의 우려에 대한 의견은?

- (부처) 특금법은 시행령 위임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,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독자적인 책임으로 보는 최근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특금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법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?

- (부처)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할 때 경제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공정거래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FT)가 권고하는 위험기반 접근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, 이에 대한 의견은?

- (부처)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르면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보다 많은 관리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나,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개정 특금법의 취지는 이해되나,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?

- (부처) 합리적인 예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, 법률의 위임한 재량의 범위가 넓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예외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

(3) 위원회 논의

○ (○○○ 위원) 이해관계자는 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, 개선권고안을 마련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여 부처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

- 이를 위해, 자본시장법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같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준용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

○ (○○○ 위원)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
○ (○○○ 위원) 이해관계자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뿐만 아니라 가상사자산사업자 규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,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대권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
□ **심의 결과 : 개선권고 · 부대권고 · 원안동의**

○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요건 중 **법위반 형사처벌 이력 요건 판단**시 **예외**를 **인정**할 **필요**가 있으며, 이를 위해 **자본시장법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** 등의 **관련 규정에 준하여 예외조항**을 **마련**할 것을 **개선권고**

-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**2단계 입법**을 **신속**히 **제정**하여, 규제의 명확성 차원에서 **불확실성**을 **제거**해 줄 것을 **부대권고**

○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요건 중 **인력,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** 요건은 **원안동의**